

노인장기요양보험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2021. 09.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관 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를 따르며 이에 따라 배치한 인력을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시 제50조(근무인원) 및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종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된 인력이며,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 근무를 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따라 시설급여 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그리고 직원의 자격 기준과 입소자 수에 따라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표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 사사	의사 또는 계약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1 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실 은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1명 (1회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사례1

○○요양원은 입소자 100인 미만 시설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위생원 1명을 필수배치 하거나 미배치 시 세탁 물을 전량 위탁하여야 하나, 2018년 △월부터 현재까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이불, 침대 시트 등 일부만 위탁업체에 맡겨왔음.
나머지 의복 등은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며 세탁을 수행함.
○○요양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공단에는 전량 위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급여 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였음.

사례2

A는 □□요양원의 위생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하였으나, 주 업무는 조리실에서 밥을 하거나 반찬을 준비하는 등 위생원 업무를 하지 않고,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해왔음.
실제 위생원 업무는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자와 요양보호사가 수행해 왔으나 A가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③ ~ ⑤ (내용 생략)

-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④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례1

○○요양센터 A간호사는 미리 작성한 방문간호지시서에 의사의 서명만을 받아 2019년 △월부터 2020년 △월까지 총 4,000회 이상의 급여비용 및 간호사 가산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 하였으며, 발급 의료기관은 부당청구에 대한 우려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미청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48조(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를 따르며 이에 따라 배치한 인력을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시 제50조(근무인원) 및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종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된 인력이며,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근무를 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따라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함.

사례1

○○노인요양원 조리원 A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실제로는 근무시간 동안 본인의 자택(미지정공간)에서 요양원에 가져 갈 국이나 반찬을 만들어옴. 종사자 1인으로 인정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출퇴근 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등록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

사례2

2020년△월부터 △월까지 □□요양시설 조리원인 B는 동일 기간 동안 급식위탁업체인 ○식당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시설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식사뿐 아니라 동건물 5층에 위치한 타사업장 직원들의 식사도 함께 조리하여 해당 시설 조리원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감액 없이 급여비용 청구.